

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2017. 01. 12. ~ 01. 16.)

일 반 의 안

거 창 군

---- 목 차 ----

의안번호	건 명	페이지
2017 - 7	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	3

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
번호 2017-

제출일자 : 2017. 1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요구이유

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 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

나. 위 치 :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-22(원학길 94-29)

다. 규 모

- 부지 : 450m²(유상임대 : 진산석재 김정철 / 기간 : 2017.01.01~2019.12.31)
- 건물 : 392m²(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, 준공 2007.12.28)
- 시설 :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설비 등
- 사업비 : 451백만원(건축물 138, 기계설비 309, 부대시설등 4)

라. 주요 사용내용

- 신기술개발사업 추진(고부가가치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시험생산)
- 검증, 분석업무 수행(품질 신뢰도 및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증대)
-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시험서비스 제공 및 석제품질시험 수행

마. 사용·수익허가 계획

○ 허가목적

-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·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·운영
- 거창화강석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의 지속추진
-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

○ 사용기간 : 2017. 1. 1 ~ 2019. 12. 31(3년간)

○ 허가대상 :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사장

○ 허가물건 :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및 기계설비(붙임참조)

○ 사 용 료 : 군의회 동의를 통한 사용료 면제

3. 사용·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(안)

가.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

- 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거창화강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며
-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은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기능석재를 한곳에서 생산하는 공장이며,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로서 특화제품 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임.
- 거창군을 대표하는 지역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·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·개발을 통하여 양산체제를 구축, 공동생산·전시 또는 판매를 위한 시험생산 및 연구에 필요한 공장이므로 비영리 법인인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.

나 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
 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가 동의한 경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
 -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4. 참고사항

가. 기 사용료 면제 현황

- 허가기간 : 2014.1.1 ~ 2016.12.31
- 사 용 료 : 12,520,000원/년 (군의회 사용료 면제 동의, 2014. 1)

나. 사용료 부과시 산출내역

- 금액 : 215,616,000원(재산가액)×50/1,000(요율) = 10,780,800원/년

※ 재산가액 산출 : 215,616,000원

- 건 물 : 126,616,000원(시가표준액)

- 기계설비 : 89,000,000원(전년도 105,000,000원)

붙임 1

□ 사용·수익허가 재산목록

○ 건 물 :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, 392m²

세부시설명 면 적(m ²)	공 장	사무실	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	화장실
392	302	26.4	56.1	7.5

○ 기계설비

설 비 명		용 도	규 격	수 량	비고
주 설 비	거 치 대	석재 투입장치	1,120mm×2,000mm× 800mm	1대	
	세 척 대 (Water shower)	석재에 묻어있는 이물 질을 고압의 물로 세척 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공기분사대 (Air blowing)	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건 조 대 (Dryer)	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광촉매코팅기 (Photo-catalyst coater)	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열처리대 (Heat treatment)	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 시키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2,000mm	1대	
	적 재 대	코팅된 석재를 반출하는 장치	1,120mm×2,000mm× 800mm	1대	
정 수 설 비	고압펌프	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	380V,1.2Kw S.P : 7kgf/cm ² C : 24,400kg/h	1대	
	정수설비	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 되는 세척수의 이물 질을 제거하는 장치	마이크로필터:<25μm 압력조정기:7kgf/cm ²	1대	

설 비 명		용 도	규 격	수량	비고
공 압 설 비	공기압축기 (Screw compressor)	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 하는 장치	AC 380V,22Kw FAD : 3.13m ³ /min W.P : 9.0kgf/cm ²	1대	
	냉동식 건조기	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85Nm ³ /min W.P : 9.0kgf/cm ²	1대	
	흡착식 건조기	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	F.C : 3.65Nm ³ /min D.P : -25 μ m 이하	1대	
	에어탱크 (Air tank)	압축된 공기를 저장 하는 장치	M.P : 9.9kgf/cm ² G W.P : 9.0kgf/cm ² G	1대	
집 진 및 탈 취 설 비	집 진 기	공정 중 발생하는 미 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	820mm×820mm× 1,780mm	1대	
	광반응식 스크러버 (탈취설비)	광촉매 코팅용액 성분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	1,700mm×400mm× 1,400mm	1대	
위 생 시 설	변 기		양변기 소변기	2개소 1개소	
	세 면 대		세면대	1개소	
	정 화 조		1m ³ /1일	1식	

<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령 >

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제24조 제1항 제4호)

□ 법 제24조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(제17조 제5항 제2의2호)

□ 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